

의안번호	제 86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0월 1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이옥규, 박상돈,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송미애

1. 개정이유

-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4조, 제6조)
 - 「충청북도 정보화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
 -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→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범위 내에서 → 범위에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정보통신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**「충청북도 정보화 조례」 제4조**”를 “**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4조**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**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35조제2항**”을 “**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0조제2항**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범위 내에서**”를 “**범위에서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「충청북도 정보화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교육기관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35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「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교육기관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5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9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·생산하는 사업자
2. 장애인·고령자·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
3.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

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3. 그 밖에 경제적, 지역적,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**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

- 제44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)**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.
1.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·생산하는 사업자: 해당 지능정보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·기술 지원의 내용
 2. 장애인·고령자·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: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·기술 지원의 내용
 3.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(이하 “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”이라

한다)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: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·기술 지원의 내용

-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1. 제1항제1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: 지능정보제품의 개발·생산 실적, 개발·생산하려는 지능정보제품의 유용성 및 지능정보제품의 개발·생산계획의 적절성
 2. 제1항제2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: 콘텐츠의 제공 실적, 제공하려는 콘텐츠의 유용성 및 콘텐츠의 제공계획의 적절성
 3. 제1항제3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: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, 개발하려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계획의 적절성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